

2020년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 공고

2020년 시화지구(대송단지) 제2공구 일시사용에 관하여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일시사용 개요

- 가. 위 치 : 화성시 송산면, 서신면 일원
나. 면 적 : 4,772,889.4m²
다. 사용기간 : 2020. 04. ~ 2020. 12. 31.
라.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

②. 일시사용 운영 계획

- 가. 공고기간 : 2019. 3. 12 ~ 3. 20 (7일간)
나. 신청기간 : 2019. 3. 12 ~ 3. 23 (09:00~18:00)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다. 신청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유지관리부(4층)
(주소: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17, 고잔동 524-3번지)

라. 신청자격

- 수도작 재배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농업법인
 -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 공고일(2020.02.26.) 이전 설립된 농업법인
 - 화성시 송산면 마산·고포·지화·칠곡·중송·독지·고정·신천·천등리 및 서신면 전곡리, 남양읍 신외동, 시리동 소재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농업생산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공 통	○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서 - 조합원 5인이상 모두가 농업인인 법인	○ 총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피 해 농어업	○ 피해농어업인이 전체 구성원의 1/2이상인 법인	○ 총자본금의 51% 이상을 피해농어업인이 출자한 법인

- 조사료 재배 : 화성시 소재 조사료재배 유경험 법인 및 축산단체(조합)
 - 곤포사일리지 지원금 수령 내역 등 조사료 재배 증빙자료 제출
- 2019년 계약법인 한함.

③. 일시사용료

- 가. 산정공식 : 해당시·군 단위면적당 평균 쌀 수확량(kg)×전국 평균 kg당 쌀가격×연차별 임대요율(%)×임대면적(㎡) ×시군별 지표(△P)÷1,000
- 나. 고정임대료 : 계약기간 중 동일한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 쌀 수확량(kg) : 해당 시·군·구 5년간 쌀수확량 중 최고 및 최저 수확량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 평균 수확량.
 - kg당 쌀 가격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가격 중 최고 및 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도 수확기 평균 쌀 가격
- 다. 변동임대료
- 쌀 수확량(kg)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당해연도 시·군별 논벼 생산량” 기준자료 적용합니다.(11월 25일 기준).
 - kg당 쌀 가격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당해 연도 전국 평균 쌀 가격” 기준자료 적용합니다.(11월 25일 기준)
- ※ 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는 타작물을 재배함에도 불구하고 수도작 임대료를 적용합니다.
- 라. 시군별지표(△P)는 화성시 0.921을 반영합니다.

④. 구비서류

- 가.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서 1부.
-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다. 법인 정관 및 출자 회의록 사본 각 1부.
- 라. 출자금 확인 증빙서류 1부.
- 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 : ㉠ 법인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필지별 1부)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각 1부
 - 출자금이 현금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금융기관 발행 잔액증명서 1부
 - 출자금이 농기계인 경우 : ㉢ 해당 법인의 전산대장 출력물 또는 출자자산 명세표 1부
㉣ 출자한 농기계의 면세유류 관리대장(농협발급)
- ※ 해당 농기계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잔존가액을 출자금으로 인정
- < 잔존가액 산정방법 : 취득가액 - [취득가액×경과년수×연간 상각율(1/6)] >
- 마. 간척지경작확인서, 쌀소득등보조금직불금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바. 법인 중복 가입 배제 각서 및 법인 선택결정 조합원 명부 각 1부.
- 사. 법인구성원 피해농어업인 인적사항 확인서 1부.
-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또는 경기남부수협 확인 받은 후 제출
- ※ 피해농어업인은 당해 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배우자 포함). 단, 피해 농업인으로서의 지위의 이전(양도 또는 상속) 인정 불가(배우자가 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피해농어업인 배우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제적등본 첨부)
- 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 신청자(대표자) 신분증 지참

5. 관련도서 열람

가.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유지관리부(4층).

나. 문 의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031-412-1436)

※ 관련도서 : 사업시행구역도, 필지별 면적조서

6. 유의사항

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도 임대간척지에 대한 타작물재배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2020년도 신규 임대간척지를 신청하는 임차인은 20%를 의무적으로 타작물재배 면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2020년 이전 임대간척지 계약면적 중 타작물 재배 의무면적(20%)을 초과하여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초과 면적만큼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 합니다.
- 간척지를 대상으로 '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며 '휴경' 참여는 불가합니다.
- 2019년까지 타작물 재배로 임대 계약된 면적은 2020년도에도 타작물 재배로 임대합니다.

나. 일시사용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도 일시사용대상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양수장을 통한 용수공급은 불가하며, 경작자가 자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일시사용료 감면은 「자연재해대책법」,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향후 일시사용 대상자 및 임대 대상자 자격을 해당 법인 및 그 구성원까지 박탈합니다.

2020. 03. 12.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

